



1983

UN의 WCY83 宣言과 韓國 通信行政의 課題

法制的側面을 中心으로

83301

王志均
光云大学 电子通信工学科

A Study on the Problems of Communications Administration in Korea concerning with WCY83

Jee-Kyoon WANG
Dept. Telecommunication, KWANG-WOO University

ABSTRACT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36th session) has proclaimed the year 1983 World Communications Year(WCY83); Development of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s, with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ITU) serving as the lead agency for the year.

Therefore, Author investigate the purpose and background of WCY83 and its programs by ITU. As the result, those international plans to implement effectively WCY83 are highly reputed to be reasonable.

On this Occassion, I review the current problems refferring to communications policies in Korea and suggest some proposals from the view point of its legislations in order to stimulate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s Science.

I. 原言

1. 問題의 提起
2. 研究의範圍와 方法

II. UN의 WCY83 宣言

1. 世界年의 意義
2. WCY83의 背景
3. INFRASTRUCTURES의 解釋
 - (1)字典의 見解 — INFRASTRUCTURES:

THE UNDERLYING FOUNDATION OR BASIC OR BASIC FRAMEWORK (AS OF AN ORGANIZATION OR A SYSTEM).

對外語의 SUPER-STRUCT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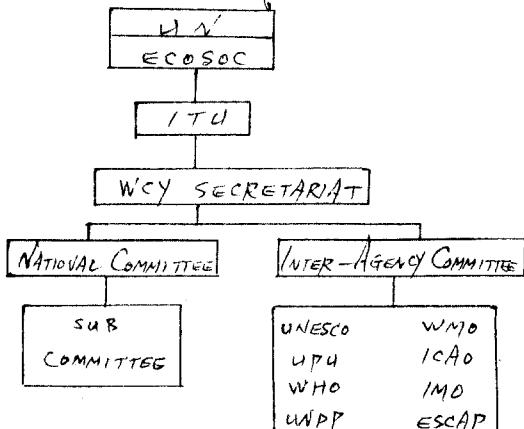
AN ORGANIZATION OF IDEAS (AS AN IDEOLOGY) OR OF PERSONS (AS A STATE BUREAUCRACY) CONCIEVED AS AN EXISTING ON A HIGHER LEVEL FUNCTIONAL LEVEL OF SOCIETY (THE PRINCIPLE THAT THE

FORM OF ECONOMY DETERMINES THE POLITICAL ~. (THE MERRIAM-WEBSTER)

(2) 哲學上の見解

WCY83의 國際動向

(1) UN의 推進機構



(2) ITU의 計劃 事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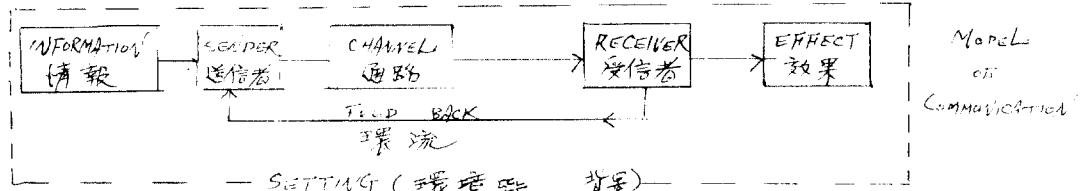
- ① PILOT PROJECT (示範事業)
- ② TELECOM 83 (世界電気通信博覽会)
 - (가) TELECOM EXHIBITION
 - (나) BOOK FAIR (圖書展示会)
 - (다) GOLDEN' ANTENNA (電気通信博覽会)
 - (라) YOUTH ART COMPETITION (그림 전람회)
 - (마) FORUM (電気通信世界 SYMPOSIUM)
 - (나) 주제: One WORLD, One NETWORK
 - (라) 주제: Telecommunication for Everyone
- (3) 分析 評価
 - ① 目標: 通信의 基本 方向의 制定
 - ② 目標: 各国의 通信政策의 檢討와 分析
 - ③ 手段: UN構構新設, ITU의 計劃, 各国の 行事

III. 韓國 通信行政의 課題

WCY83은 異外, 우리나라 通信行政의 当面課題을 通信科學의 觀地에서 分析 檢討한 後, 主要 法制上의 政策의 改善案을 提示해 보고자 한다.

1. 國民意識의 刷新

(1) 通信의 綜合科學性



- ① 情報 ... 通信의 基本 (主に 人文科学分野)
- ② 通路 ... 通信의 手段 (主に 工業技術分野)
- ③ 效果 ... 通信의 結果 (主に 心理・政治分野)
- ④ 通信者 ... 受信者 (主に 行動科學 (類生物学分野))
- ⑤ 環境 ... 背景 ... 通信의 行動의 環境 (時代의 地所 (主に 歴史, 地理等의 分野))

- 通信 ... 人文, 然然, 自然의 各分野의 科學 (獨創的 論述의 背景의 方面의 背景)
- 例: SCIENCE (TELECOMMUNICATIONS SCIENCE)이다.

(2) 通信의 重要性

① 通信의 重要性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chapter 1)
And the Word was the Go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太初에 말씀이 있었

이 時候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데 이

말씀은 끝나지 않았다.

•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은 通信으로 解釋
되는 天地의創造(天地創造) 과 人間의 芬芳(芬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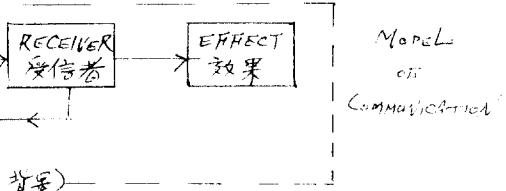
② 通信의 重要性

③ 組織理論 (J. REINHOLD)

組織의 部分의 組合를 制御할 時에, 各部分의 部分을 組合하는 関係를 構成하게 되는 것. 部分의 相互作用을 通過하여 全体로의 組合되는 것이다.
이는 即시 整部的 方面에 通信이 存在하지 않는다는 것은, 通信 자체가 在하지 어려우며, 之로 引起되는 重要事項이單純히 集合에 不屬於 것이다.

HUMAN ORGANIZATION IS COMMUNICATION SYSTEM.

(1) 経営管理理論 (美國經濟人協會, 斯科特)
 모든 経営管理 管理人의 作業 重要事項 (DISTINCTIVE JOB)은 企劃이나 作業指示, 檢討
外 聽取, 組制調整方法의 設定와 實踐의 其他
의 日常業務이 아님. が故に 核心的 改善
重要事項은, 例: 根本的 改善 方面 朴昌善 외
이를 通过して 作業 方面 完成 任務을 完成시켜야
하며, 通信等의 效率의 提高를 作業에 有する 것이다.



(3) WCY83에 대한 解釋의 統一
世界의 通信政策論과 그 內容은 基本적 세
가지의 方向의 之外는 要解水 次는 計划, UN
ESCO 通信政策論, 亞洲 EUROPE型 通信政策論
와 美國型 通信政策論이다.

UN의 WCY83은 對於 国内動向에 關한 COMMUNI-
CATION Policy (把象的 政策論), COMMUNICATIONS
Policy (亞洲 政策論) 및 電氣通信政策 (TELECOM-
MUNICATION Policy)을 各專門層의 서로 모두 이를
歡迎引起하고 있다.

UNESCO가 2의憲章에서 規則의 “大衆通訊의
自由, 加法의 透明, 諸民族의 相互理解의 促進協
力의 伸張의 目的”에 言及하여 表象의 伸張思想의
自由交流을 誓言하는 것은 〈미디어〉 政策論이라
可與認定. 但凡, 新聞報道等 또는 弘報等의

名稱으로 알려진 MASS COMMUNICATION의
政策論은 特定的인 EUROPE型近代政策論
이 誰당하는 것으로 보아진다.

美國近代型政策論이玷, 通信技術의 遠步,
各 대미의 復劇·技術·重要性의 变化等으로 因
하여, 現代미디어 及其 法律·政策의 檢討
等에 주의 開心을 置고 由는 것인 바, 이
WCY 83의 目的의 通信政策은 바로 TELC
-COMMUNICATION Policy에 誰당하는 것이라고 믿
어진다. 理由인즉, UN의 WCY 83의 主
導機關은 UNESCO가 아닌 國際電信會議
聯合(ITU)으로 決定된 바 때문이다.

即諦, UN의 委員會에는 諸國 放送
이나 弘報이 委員會に 归す。 뿐만 아니라,
ITU量規削減 國際電信會議協約(ITU)
에서 规定된 電信通信의 主管方은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바로 電信部이 誰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WCY 83의 主導機關으로는 無當
의 電信부가 責任者가 되어, 韓國電信委員會이
韓國放送委員會의 努力を 막아야
될 것으로 預定된다.

이와 같은 解釋의 統一은 附를 수록 有益な 것
이다.

2. 電波行政 民主化의 促進

電波行政의 民主化 促進 方案이玷, 電波
行政上の 救濟制度의 拡大乃至 新設과
国民의 電波利用 開放의 極大化를 要す。

(1) 電波行政救援制度의 改善

現在의 電波管理制度 規制中에는, 非常事
態에 附加의 定費賠償(法66-2), 電波政
策의 变更에 따른 模特補償(法64), 補償
額에 關한 行政訴訟(法64-4) 및 無線從
事者에 關한 資格證取消에 關한 警告
制度(法67-3)가 있을 따름인 바, 特히 補
償者에 對한 警告制度는 全無하다.

이러한 漏洞欠缺은 即速히 補完되어야 하는
것이며, 其他 技音賠償等에 關한 것도 新設되
기를 希望한다.

日本国에는 電波監理審議会의 規制가
獨立된 電波法에 關한 邊의 之로 有別
化된지 有來이다. 이 委員會은 行政救援方
案의 警告制度는 分解되어나와 이 警告
制度에 關한 初審대 誰당하는 司法의 機構,
까지도 有有地 있다. 그 뿐에 電信部是
에 關한 諮問 附 附帶로 行하는 바, 這 有 그

議會는 異議 附屬하여 計畫 附屬하여 附
規定하여 处す。(法90年11月)

(2) 国民의 電波利用의 極大化

① POCKET BELL 및 CODELESS TE
-LEPHONE의 利用普遍化

② AM/FM無線의 邊域擴大化

③ CITIZEN RADIO의 活用加強化

④ MCAC(MULTI-CHANNEL ACCESS)의 利用
擴大化

⑤ 高周波利用設備許可制의 撤棄

3. 行政組織의 改善

韓國의 現代行政組織은 MASS COM及專
營의 文化公報部、船舶無線通信士
主管의 海軍港務局、無線從事者資
格試驗室 訓練하는 韓國職業訓練院
管理公司等(既 無有近代의 主管方인 電信部
로 異峯化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電信
部 關係公職員 作用等의 作用을 有する 總務
處의 行政組織도 있다.

따라서, 이를 積極화한 現代의 行政组织
을 主管方인 電信部로 著化한다면, 行
政上の 能力 提高上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① 公報 所屬의 放送 管理部門을
連合部門에 統合시키고 政府組織法의 改
正合理化引致으면 한다.

② 電信部 職制를 改正하여 電波
管理局내에 宇宙通信課 및 檢査課(無
線從事者國家試驗專程)을 增設할 것

③ 現代部門에 高級現代人力養成을
外하 電信大學의 新設이 有益된다.

④ 其他(人手面의 組織의 廣泛化, 電
子化等含括, 1981年 次年, 電氣通信政策
電波監理의 發展方向 王志由 著表參考)

IV. 結語

WCY 83을 咏아, UN이 이를 宣布하
目的、背景을 調査하였으며, 아울러 이를
위한 ITU의 計劃도 被評하였다.

同時に, 우리나라 現代行政의 諸問題
及改善의 刷新, 電波行政의 民主化促進
및 行政組織의 改善等으로 分析하여 考察
하였다.

이 小見이 WCY 83 弘報日報에 寄集
되고, 아울러 우리나라 現代行政 極大化促
進에 조금이라도 财獻되기를 期待한다.